

懸案分析 93-6

大統領 緊急命令制度의 檢討

1993. 9.

연구자 : 박영도(수석연구원)

김인재(선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 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目 次

I. 國家緊急權制度의 意義	1
II. 緊急命令制度의 變遷	3
1. 憲法規定	3
2. 緊急命令權發動의 事例	6
III. 現行 憲法上의 緊急命令制度	13
1. 憲法規定	13
2. 比較檢討	13
IV.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의 檢討	15
1. 經 過	15
2. 發動要件과 관련한 論議	16
3. 代替立法과 관련한 論議	17
4. 緊急命令의 公布節次	20
<附錄>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및 대통령령	21

大統領 緊急命令制度의 檢討

I. 國家緊急權制度의 意義

오늘날 憲法에 있어서 모든 제도는 平常狀態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헌법의 지도원리를 이루고 있는 基本權이나 權力分立의 적용도 평상상태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平常狀態란 헌법이 규정한 대로 國法秩序가 유지되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大統領의 평상시에 관련된 입법·행정·사법에 관한 권한의 정상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現代國家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는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危機常存의 현실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위기관리를 위한 危機政府(Crisis Government) 내지 緊急政府(Emergency Government)體制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존립이 문제되는 非常時에 있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제약을 넘어서 권력의 非常集中과 基本權制限 기타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를 포함하는 國家緊急權이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緊急權(Emergency Power, Staatsnotrecht, pouvoirs de nécessité)』이란 국가의 존립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重大한 危險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平時體制를 초월하는 권한을 국가권력담당자에게 위임하여 행정권의 집중과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예외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적 위기를 제거·방지할 수 있게하는 憲法保障制度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¹⁾

한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위기극복의 主體는 大統領이라고 할 수 있다. 大統領은 평상시에도 국정을 통합·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한층 강력한 國政의 統合·調整權이 있다고 하겠다. 대통령은 국가의 元首로서 행정부의 수반이며 또한 憲法의 위기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²⁾ 따라서 大統領은 국가의 위기에서 緊急權을 발동하여, 국정을 통합·조정한다. 그리하여 최근 8월 12일에 발동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도 비상시에 大統領에 부여된 강력한 국정의 통합·조정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1993년 8월 12일 20시 放送에 의하여 발령·공포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과 관련하여 그 憲法的 根據를 살펴보고, 나이가 制憲憲法에서 부터 현행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緊急命令權에 관한 조항을 개관한 후 아울러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緊急命令權發動의 事例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 1) 國家緊急權에 관한 문헌은 매우 많으나, 주요한 것으로는 金道昶, 「國家緊急權論」, 靑雲社, 1972 ; 李鍾祥, 「大統領의 國家緊急權」, 公法의 諸問題(海巖 文鴻柱博士 華甲記念論文集), 海巖社 1978 ; 金榮秀, 「國家緊急權에 관한 研究」, 成均館法學 창간호, 1977 ; 李康燦, 「國家의 非常事態와 非常措置에 관한 研究」, 朝鮮大 博士論文, 1974 ; 韓沃申, 「國家緊急權의 法理와 限界」, 國際共產圈法律問題研究所, 1979 ; 金箕範, 「韓國에 있어서의 國家緊急權」, 延世論叢 제9집, 1972 ; 同, 「大統領의 緊急財政經濟處分權과 緊急命令權」, 考試界 1963.12. ; 許營, 「國家緊急權에 관한 法的 檢討」, 司法行政 1974.1. ; 閔京植, 「憲法의 危機理論에 관한 研究」, 서울大 碩士論文 1979 등 參照.
 - 2) 李鍾祥, 「非常時에 있어서 大統領의 國政統合·調整權」, 公法研究 제19집, 1991, 20~21面.

II. 緊急命令制度의 變遷

1. 憲法規定

우리 나라는 制憲憲法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긴급권규정에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우선 第1共和國憲法에서는 긴급명령제도와 비상계엄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6.25사변을 극복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第2共和國憲法은 대통령의 긴급명령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재정처분과 긴급재정명령·계엄만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第3共和國憲法은 대통령의 긴급명령제도를 부활하고 긴급재정·경제처분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인정하고 계엄제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第4共和國憲法은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긴급권을 인정하여 긴급조치권과 계엄선포권을 규정하였다. 第5共和國憲法은 긴급권의 명칭을 비상조치권으로 변경하고, 계엄선포권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現行 憲法은 제3공화국헌법의 국가긴급권과 본질적으로 같은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을 규정하고 계엄선포권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緊急命令制度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조항	조 문 내 용
제1공화국 헌법 (1948. 7. 17)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구 분	조항	조 문 내 용
제2공화국 헌법 (1960. 6. 15)	제57조	<p>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전항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제3공화국 헌법 (1962. 12. 26)	제73조	<p>①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②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 히 효력을 회복한다.</p> <p>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p>
제4공화국 헌법 (1972. 12. 27)	제53조	<p>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 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p>

구 분	조항	조 문 내 용
		<p>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p> <p>⑤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제5공화국 헌법 (1980. 10. 27)	제51조	<p>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p>
현행헌법 (1987. 10. 29)	제76조	<p>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p>

구 분	조항	조 문 내 용
		<p>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p> <p>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p>

2. 緊急命令權發動의 事例

(1) 緊急命令 : 16건

制憲憲法에서 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긴급명령권 발동사례를 살펴 보면 第1共和國에서 긴급명령 14건, 第3共和國에서 긴급명령 1건³⁾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최근의 金融實名制와 관련한 긴급명령 1건 등 16건이 발동된 바 있다. 또한 第4共和國에서는 긴급조치 9건이 발동된 바 있다.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번호	연월일	제 목	주 요 내 용
제1 공화국 헌법	제1호	50. 6. 25	비상사태하의 범 죄처벌에관한특 별조치령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벌함을 목적으로, 범죄의 형량을 중하게 하고, 재판을 단심으로 하도록 하였음

3) 자세한 내용은 法制處, 「法制處40年史」, 1988, 184~186面 參照.

4) 第4共和國에서의 緊急措置權發動에 관한 상세한 것은 葛奉根, 「大統領
緊急措置權의 憲法的 基礎」, 憲法研究 제4집(韓國憲法學會出版部),
1979, 71~112面 參照.

구 분	번호	연월일	제 목	주 요 내 용
제1 공화국 헌법	제2호	50. 6. 28	금융기관예금등 지불에관한특별 조치령	북한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 하에서 금융기관예금등 지불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예금 기타 자금 지불은 재무부장관등의 승인을 얻도록 함
	제3호	50. 7. 16	철도수송화물특 별조치령	북한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 하에서 철도수송증의 화물에 대하여 사태 수습상 필요한 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수송화물의 하적, 이적, 수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제4호	50. 7. 19	금융기관예금대 불에관한특별조 치령	북한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 하에서 금융기관이 전재지구로 부터의 피난민을 위하여 예금을 대불하는 특별 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제5호	50. 7. 26	계엄하군사재판 에관한특별조치 령	계엄선포지역내의 군사재판의 소송절차를 간략히 함으로써 범죄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계엄군법회의의 구성, 판·검사의 군법무관, 군검찰관의 직무대행 등을 규정하였음
	제6호	50. 7. 26	징발에관한특별 조치령	북한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 하에서 군작전에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을 징발 또는 징용함을 목적
	제7호	50. 7. 22	비상시향토방위 령	북한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 하에서 국민의 자위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향토를 방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함을 목적으로, 만14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향토방위의 의무를 지며, 부락단위로 자위대를 조직하여 향토방위와 방범을 주된 임무로 하게 하였음
	제8호	50. 7. 22	비상시경찰관특 별징계령	비상사태 계속중 경찰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었음

구 분	번호	연월일	제 목	주 요 내 용
제1 공화국 헌법	제9호	50. 8. 4	비상시향토방위령	긴급명령 제7호(1950. 7. 22) 비상시 향토방위령이 1950년 8월 1일 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그 영과 목적·내용이 유사한 것을 다시 공포한 것이었음
	제10호	50. 8. 28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	정부가 비상사태의 수습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조선은행권은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도록 함
	제11호	50. 12. 1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	地稅의 과세표준, 세율, 지세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지세법의 특례를 규정, 이 긴급명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50. 12. 13) 이 사유를 공포하였음(51. 1. 18)
	제12호	52. 10. 4	포획심판령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포획심판소의 구성·관할·심금·심판절차 등을 규정하였음
	제13호	53. 2. 15	통화에관한특별조치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폐단위를 환으로 하고 이에 따른 거래 기타 제반조치를 규정
	제14호	55. 9. 5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증개정의건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그 요금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었음 23건의 재정긴급처분을 수반하였음
제2 공화국 헌법				
제3 공화국 헌법	제15호	72. 8. 2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경제조치를 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사채의 조정,

구 분	번 호	연 월 일	제 목	주 요 내 용
				특별금융조치,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산업의 합리화, 재정운영의 효율화, 금리의 인하, 물가와 환율의 안정에 관한 조치를 취함
제4 공화국 헌법		74. 1. 8.	긴급조치 제1호	대한민국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을 금하고 헌법의 개정·폐지의 일체의 주장·발의·제안·청원을 금하는 긴급조치
		74. 1. 8.	긴급조치 제2호	긴급조치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긴급조치
		74. 1. 14.	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강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긴급조치. 7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74. 4. 30.	긴급조치 제4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에 관하여 가입 및 관여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74. 8. 23	긴급조치 제5호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74. 12. 31	긴급조치 제6호	긴급조치 제3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75. 4. 8.	긴급조치 제7호	고려대에 대하여 휴교를 명하고 교내외에서의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하는 긴급조치
		75. 5. 13.	긴급조치 제8호	긴급조치 제7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75. 5. 13.	긴급조치 제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급조치)	유언비어의 날조·유포하는 행위, 표현물에 의하여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선동하는 행위,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등

구 분	번호	연월일	제 목	주 요 내 용
				을 금지하고, 위에 위반한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5 공화국 헌법				
현행 헌법	제16호	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령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 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실명 거래의 의무화, 비실명금융자산의 인출금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 실명전환의 조기 유도 및 비전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중소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보증을 규정함

(2) 緊急財政處分 : 27건

긴급재정처분은 제1공화국에서 27건이 발동되었다. 第1共和國 당시의 緊急財政處分 27건 가운데 第1號부터 第3號는 6.25사변 중에 발동되었으며, 나머지 24건은 우편요금을 비롯한 모든 國營事業의 料金(수수료·사용료 등)을 1955년 8월 15일 이전으로 引下(還元)할 것을 지시한 1955년 9월 3일의 大統領 特別談話(이른바 9.5. 긴급조치)에서 비롯하였다. 이에 대해 國會는 1955년 9월 28일 이 긴급재정처분을 승인하였으나, 다만 第27號의 「도입 비료판매가격개정에 관한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換率引上으로 인하여 9.5. 긴급조치에 의해서 비료판매가격이 도리어 인상된 결과, 수요자인 農民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그 承認이 보류되어 동년 11월 20일에 修正通過 되었다.⁵⁾

5) 이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으로 규정된 國營事業의 料金을 변경하는 경우에

구 분	번호	연월일	제 목
제1공화국	제1호	50. 7. 7	6·25事變收拾緊急豫算
	제2호	52. 9. 7	鹽賣渡價格改定에關한件
	제3호	52. 9. 7	製造煙草定價改定에關한件
	제4호	55. 9. 5	國有鐵道運賃料率改定의件
	제5호	55. 9. 5	專賣價格改定의件
	제6호	55. 9. 5	郵便規則中改正의件
	제7호	55. 9. 5	郵便爲替規則中改正의件
	제8호	55. 9. 5	郵便貯金規則中改正의件
	제9호	55. 9. 5	郵便振替貯金規則中改正의件
	제10호	55. 9. 5	서울特別市及市公金受拂郵便振替貯金特別取扱規則中改正의件
	제11호	55. 9. 5	道歲入收納郵便振替貯金特別取扱規則中改正의件
	제12호	55. 9. 5	電報規則中改正의件
	제13호	55. 9. 5	電報料金後納規則中改正의件

이것을 「긴급재정처분」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國營事業의 料金과 肥料 등의 가격은 「法律 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財政法 제3조·제83조의 규정을 존중한 나머지 國營事業의 요금 등이 아무리 大統領令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國會의 議決을 얻기 전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또한 一般大統領令을 긴급명령으로서 改正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緊急財政處分의 형식으로 발동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內容 및 問題點은 李鍾極, 「9.5 緊急措置와 그 承認의 批判」, 法政 1955. 12., 3~5面 參照.

구 분	번호	연월일	제 목
	제14호	55.9.5	新聞電報認可規則中改正의件
	제15호	55.9.5	官廳用 및 私設의 電信電話 및 無線電信電話에 의한 公衆通信取扱規則中改正의件
	제16호	55.9.5	氣象通知電報規則中改正의件
	제17호	55.9.5	船舶通報規則中改正의件
	제18호	55.9.5	無線電報規則中改正의件
	제19호	55.9.5	電話規則中改正의件
	제20호	55.9.5	私設電信電話規則中改正의件
	제21호	55.9.5	私設無線電信, 無線電話規則中改正의件
	제22호	55.9.5	放送用無線電話規則中改正의件
	제23호	55.9.5	電信電話維持依託規則中改正의件
	제24호	55.9.5	無線通信士資格檢定令中改正의件
	제25호	55.9.5	報道無線送信料金中改正의件
	제26호	55.9.5	電話處理規程中改正의件
	제27호	55.9.8	導入肥料販賣價格改正에 關한件
제2공화국 ～ 현행			

III. 現行 憲法上의 緊急命令制度

1. 憲法規定

현행 헌법은 大統領의 국가긴급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권한으로서 제76조 제1항에서 「緊急財政 · 經濟處分 및 命令權」을, 제76조제2항에서 「緊急命令權」을 규정하는 한편 제77조에서 「戒嚴宣布權」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金融實名制의 실시와 관련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서, 동조에서는 『①대통령은 内憂 · 外患 · 天災 · 地變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국회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효력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回復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자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比較檢討

이러한 憲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 · 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의의	비상사태극복을 위한 입법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정부의 재정·경제상의 운용에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하는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	정부의 재정·경제상의 운용에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처분적 조치로서 행하는 처분
발동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있을 것 ②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③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 ④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생겼을 것 ②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③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④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동일
국회의 승인과 효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함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함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동일
효력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형식, 즉 개별적·구체적인 처분 또는 조치
한계	①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목적이 외의 목적으로는 발동할 수 없다.	①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p>② 긴급상태의 수습이 아닌 적극적 공공복리증진목적으로는 발할 수 없다.</p> <p>③ 헌법적 효력을 가진 명령이나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발할 수 없다.</p> <p>④ 국가의 보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 내에 한정된다.</p> <p>⑤ 헌법개정, 국회해산 및 군정을 실시할 수 없으며 국회·헌법재판소·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다.</p>	<p>만 발동될 수 있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발할 수 없다.</p> <p>② 긴급사태의 수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할 수 있다.</p> <p>③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은 발할 수 없다.</p> <p>④ 재정사항과 경제사항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p> <p>⑤ 재정·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 한다.</p>	<p>만 발동될 수 있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발할 수 없다.</p> <p>② 긴급사태의 수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할 수 있다.</p> <p>③ 법률에 위배되는 일시적인 처분은 가능하나 헌법에 위반되는 처분은 할 수 없다.</p> <p>④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이어야 한다.</p>

IV.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緊急財政經濟命令』의 檢討

1. 經 過

金泳三 大統領이 지난 8월 12일 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조치는 앞서 살펴본 憲法 제76조제1항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한다. 한편 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大統領은 특별담화에서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하고, 이 땅에 진정한 분배정의를 구현하며, 우

리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꽂피울 수가 없으며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도 이를 수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금융실명제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를 國會에서 法改正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으로 실시한 것은 공개적인 立法過程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에 발동된 緊急財政·經濟命令權의 발동에 따라 기존의『金融實名去來에관한法律(1982. 12. 31. 제정, 법률 제3607호)』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국회는 8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大統領이 승인을 요청한『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안』을 사실상 민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財務委員會는 8월 18일 재무부 등을 상대로 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정책질의를 행한 후 긴급명령을 만장일치로 承認하였다.

2. 發動要件과 관련한 論議

이번에 발동된 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관련하여 헌법에 규정된 발동요건, 특히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危機이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인지 및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적합한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있으나, 大統領의 이번 결정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高度의 정책적 판단이자 종합적 고려의 소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司法的 審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를 충족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危機」란 결과의 발생상태만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狀況도 포함하므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을 국회의

논의를 거쳐 改正할 경우에 초래될 경제적 혼란과 위험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危機』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의 요건도 발동 당시 국회가 閉會中이었으므로 역시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긴급명령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보다 개선된 方向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그 正當性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3. 代替立法과 관련한 論議

이번 금융실명제의 실시조치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체입법을 둘러싸고 「實名制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서 긴급명령을 法律로 대체하여야 하며, 代替立法에는 긴급명령의 내용외에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代替立法論議를 전제로 할 경우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緊急命令을 대체입법할 경우 어차피 보완규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혼선과 함께 實名制意志의 후퇴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든 현재까지 발동된 緊急命令의 입법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1952년 10월 4일에 발동된 緊急命令 제12호 「포획심판령」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그 效力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 法令은 당시의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 緊急命令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1960년 6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行政府의 權限을 제약하기 위하여 大統領 緊急命令을 폐지하면서 종전의 大統領 緊急命令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捕獲審判令이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1960년 6월 憲法改正으로 행정

부가 立法事項을 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헌법개정으로 捕獲審判令도 당연히 失效되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⁶⁾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憲法改正으로 大統領 緊急命令이라는 법령의 형식이 없어지고 이에 대한 憲法의 경과조치가 없어도 그 내용이 上位法令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한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는 見解⁷⁾에 따르면 이는 有效한 法令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 問題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번 호	년월일	제 목	경 과
제1호	50. 6. 25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1951.1.30 법률제175호 특별조치령개정법률 1960.10.13 법률제559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정 1961.8.7 동 법률 실효
제2호	50. 6. 28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
제3호	50. 7. 16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
제4호	50. 7. 19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
제5호	50. 7. 26.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1962.1.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제6조에 의하여 폐지
제6호	50. 7. 26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963.5.1. 법률 제1336호 「징발법」 부칙제2항에 의하여 폐지

6) 金鎔珍, 「 우리나라 實定法上 海洋에 관한 法令小考」, 法制 第120號 (1985. 4. 30), 26面。

7) 朴鉉析, 「最新行政法講義(上)」, 國民書館 1993, 263面。

번 호	년월일	제 목	경 과
제7호	50. 7. 22	비상시향토방위령	1950. 8. 1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함 1950. 8. 4 제9호로 다시 발포
제8호	50. 7. 22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1963. 4. 17 법률 제1325호 「국가공무원법」 제정에 의하여 폐지
제9호	50. 8. 4	비상시향토방위령	1950. 9. 16 법률 제158호 「비상시향토방위령증개정법률」 1951. 5. 12 법률 제196호 「비상시향토방위령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효
제10호	50. 8. 28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	
제11호	50. 12. 1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	1950. 12. 13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함 1951. 1. 18 이 사유를 공포
제12호	52. 10. 4	포획심판령	현행법령집 제6권7편에 수록
제13호	53. 2. 15	통화에관한특별조치	긴급명령 제13호에 의거 금융에 관한 특별조치를 목적으로 1953. 2. 27 법률 제277호로서 「긴급금융조치법」을 제정
제14호	55. 9. 5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증개정의건	1956. 12. 31 법률 제169호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증개정법률」 1960. 2. 1 법률 제542호 「우편법」 부칙제2항에 의하여 폐지
제15호	72. 8. 2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82. 4. 3 법률 제3555호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에 의하여 실효
제16호	93. 8. 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4. 緊急命令의 公布節次

헌법 제76조제5항에서는 大統領은 긴급명령을 발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여 承認을 요청하고 그 承認與否의 사실을 지체없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포는 사실을 公表하는 뜻만을 가지며 일반법률의 공포와 같이 公布함으로써 비로소 效力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公布내지 公告節次에 관해서는 현행 『法令等公布에관한法律』 제11조에서 「헌법 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이번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命令과 이 命令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은 방송 또는 일간신문에의 掲載에 의하여 공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發令·公布節次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의 금융실명제실시조치와 관련한 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法律의 效力を 가지는 緊急立法措置權에 해당하여 『法令等公布에관한法律』 제11조의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1993년 8월 13일자 官報(제12490호(그2))에 게재되고 있다(전문은 부록 참조).

〈附 錄〉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및 대통령령

- ◎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第1條(目的) 이 命令은 實地名義에 의한 金融去來를 실시하고 그 秘密을 保
障하여 金融去來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經濟正義를 실현하고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命令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金融機關”이라 함은 다음 각目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韓國銀行 및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
 - (나) 短期金融業法에 의한 短期金融會社
 - (다)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 (라) 相互信用金庫法에 의한 相互信用金庫와 그 聯合會
 - (마)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 (바) 水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水產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 (사) 畜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產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 (아)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한 人蔘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 (자)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한 信用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 (차) 새마을金庫法에 의한 金庫와 그 聯合會
 - (카)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와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
 - (타)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 · 證券金融會社 · 仲介會社 및 名義改書
代行義務를 수행하는 機關
 - (파)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 (하) 遞信預金 · 保險에관한法律에 의한 遞信官署
 - (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2. “金融資產”이라 함은 金融機關이 취급하는 預金 · 積金 · 賦金 · 契金 ·

預託金·出資金·信託財產·保險料·共濟料·株式·債券·受益證券·出資持分·어음·手票·債務證書등의 金錢 및 有價證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財務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金融去來”라 함은 金融機關이 金融資產을 受入·賣買·還買·仲介·割引·發行·償還·還給·受託·登錄·交換하거나 그 利子·割引額 또는 配當을 支給하는 것과 이를 代行하는 것 기타 金融資產을 대상으로 하는 去來로서 財務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實地名義”라 함은 住民登錄票상의 名義, 事業者登錄證상의 名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名義를 말한다.

第3條(金融實名去來) ① 金融機關은 去來者的 實地名義(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金融去來를 하여야 한다.

- ② 金融機關은 이 命令 施行전에 金融去來計座가 開設된 金融資產(이하 “既存金融資產”이라 한다)의 名義人에 대하여는 이 命令 施行후 최초의 金融去來가 있는 때에 그 名義가 實名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金融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實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既存金融資產을 支給·償還·還給·還買등(이하 “支給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命令 施行전에 발행된 어음·手票의 결제에 따른 支給등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支給등이 불가피하다고 財務部長官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第4條(金融去來의 秘密保障) ①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는 名義人(信託의 경우에는 委託者를 말한다)의 書面상의 요구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金融去來의 내용에 대한 情報 또는 資料(이하 “情報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漏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에게 그 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使用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발부한 命令에 의하여 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租稅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質問·調查를 위하여 所管官署의 長이 情報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租稅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義務가 있는 課稅資料등을 제공하는 경우

3. 財務部長官 · 韓國銀行銀行監督院長 · 證券監督院長 및 保險監督院長이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 · 檢查에 관하여 필요한 情報등의 提供을 요구하
는 경우
4. 동일金融機關의 内부 또는 金融機關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情報등을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불특정 多數人에게 義務的으로 公開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해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등의 提供을 요구하는 경
우

②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등의 提供을
요구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特
定店鋪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去來者의 人的事項

2. 使用目的

3. 요구하는 情報등의 내용

③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情報
등의 提供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第1項 各號의 規定(종전의 金融實名去來에 관한法律 第5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情報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情報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漏泄하거나 그 目的외의 용도로 이를 이
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 情報등의 提供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
다.

第5條 (既存非實名資產의 實名轉換義務) ① 實名에 의하지 아니하고 去來한
既存金融資產(이하 "既存非實名資產"이라 한다)의 去來者는 이 命令 施行
日부터 2月(이하 "實名轉換義務期間"이라 한다) 이내에 그 名義를 實名으
로 轉換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實名轉換義務期間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1月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疾病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代理의 方法에 의하여도 第1項의
規定位에 의한 實名轉換義務期間내에 實名轉換을 하는것이 곤란하다고 財務
部長官이 認定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名轉換義務期間
을 이 命令 施行日부터 6月로 한다. 다만, 6月이내에 實名轉換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明白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消滅
된 날 부터 1月로 한다.

第6條(實名轉換金融資產에 대한 稅務調查 등의 特例) 實名轉換義務期間내에 實名으로 轉換된 既存非實名資產으로서 이 命令 施行日 현재 당해 金融資產의 價額이 다음 各號의 基準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租稅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名轉換과 관련하여 資金의 出處등을 調查하지 아니하며 그 金融資產을 稅務資料로 하여 이 命令 施行전에 納稅義務가 성립된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金融資產외의 課稅資料에 의하여 租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金融去來者가 20歲 미만인 경우에는 1千500萬원 이하
2. 당해 金融去來者가 20歲 이상 30歲 미만인 경우에는 3千萬원 이하
3. 당해 金融去來者가 30歲 이상인 경우에는 5千萬원 이하

第7條(實名轉換義務 違反者에 대한 課徵金) ① 金融機關은 實名轉換義務期間이 經過한 날 이후에 既存非實名資產의 名義를 實名으로 轉換하는 去來者에 대하여는 이 命令 施行日(第5條第2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消滅된 날.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의 金融資產價額에 다음의 徵收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을 課徵金으로 源泉徵收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命令 施行日부터 計算한 期間	徵 收 率
1年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10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20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3年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30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4年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40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5年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0
5년이 되는 날의 경과후	100분의 60

② 財務部長官은 第1項의 경우 金融機關이 徵收하거나 徵收하여야 할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金融

機關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課徵金 또는 미달한 課徵金외에 그 課徵金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金額을 加算金으로 징수한다.

③ 財務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납부·滯納處分 및 還給(이하 “徵收등”이라 하다)에 관한 業務를 國稅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등에 관하여는 國稅徵收法·國稅基本法 및 所得稅法을 각각 準用한다.

이경우 “國稅”를 “課徵金”으로 본다.

第8條(實名轉換資產에 대한 所得稅 源泉徵收) ① 金融機關은 實名으로 轉換된 既存非實名資產에서 발생한 實名轉換日(實名轉換義務期間經過후에 實名으로 轉換된 경우에는 實名轉換義務期間 滿了日)까지의 利子·配當所得에 대하여는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金融實名去來에 관한法律 第4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金融實名去來에 관한法律 第144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差等課稅率 및 所得稅法 第1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率(1990년 12月 31日 이전에 발생한 利子·配當所得에 대하여는 그 발생당시에 適用되던 源泉徵收稅率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實名轉換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 또는 第4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이 非課稅 되거나 低率分離課稅되는 既存非實名資產이 實名으로 轉換된 경우에는 所得稅法第144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稅率을 適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所得稅額은 實名轉換日 현재의 해당 金融資產價額을 한도로 한다.

③ 金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182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9條(非實名資產所得에 대한 差等課稅) 實名轉換義務期間이 경과한 후에 非實名資產에서 발생하는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14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源泉徵收稅率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이경우 非實名資產에서 발생하는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15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第10條(高額現金인출 및 債券등의 거래내용 통보) ① 金融機關은 實名轉換義務期間중 個人이 金融去來者에 대하여 計座別로 現金(自己앞手票를 포

함한다)으로 支給한 合計額이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實名轉換義務期間 滿了日부터 1月이내에 그 내용을 國稅廳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金融機關은 이 命令 施行전에 발행된 債券·受益證券 및 讓渡性預金證書와 기타 證書 또는 證券의 引渡에 의하여 讓渡가 가능한 것으로서 財務部令이 정하는 金融資產(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을 金融機關에 預託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者와 당해 債券등을 대상으로 金融去來를 한 경우에 당해 債券등의 去來價額(讓渡性預金證書의 경우에 는 額面價額)이 5千萬원 이상인 때에는 그 去來內容을 去來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國稅廳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債券등을 財務部令이 정하는 期間 이상 金融機關에 預託하는 경우

2. 당해 去來者가 法人稅法에 의한 機關投資者에 해당하는 경우

第11條(金融實名去來 및 綜合課稅의 추진) 政府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實名去來를 원활히 실시하고 金融資產所得에 대한 綜合課稅의 施行準備를 하기 위하여 專擔機構를 들 수 있다.

第12條(罰則) ① 第4條 各號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懸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② 第1項의 懸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累科할 수 있다.

第13條(過怠料) 第3條의 規定을 違反한 金融機關의 任員 및 職員에 대하여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 이 경우 過怠料는 財務部長官 또는 그 委任을 받은 자가 賦課하며, 國稅徵收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14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的代理人·使用者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個人的業務에 관하여 第12條 또는 第13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該當條의 罰金 또는 過怠料를 課한다. 다만, 그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業務에 관하여 상당한 注意나 監督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기타의 法律과의 關係) ① 金融實名去來에관한法律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命令의 規定과 기타의 法律의 規定이 서로 抵觸되는 경우에는 이 命令에 의한다.

③ 既存非實名資產의 去來者가 實名轉換義務期間내에 그 名義를 實名으로 轉換함에 따라 商法·證券去來法·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法律 기타의 法律의 規定에 違反되어 罰則 또는 行政制裁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 命令施行 후 1年이내에 당해 違反事項을 是正한 때에는 그 罰則 또는 行政制裁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이 命令施行 당시 所得稅法 第144條 第1項 第1號 마目에 規定된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額 미만의 社債를 所有한 者 및 同條 第1項 第2號 가목의 少額株主(이하 "少額株主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던 者가 實名轉換義務期間내에 既存非實名資產을 實名으로 轉換함에 따라 少額株主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 命令施行 후 1年이 되는 날까지는 少額株主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命令 第8條 및 所得稅法 第144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16條(信用保證基金등의 保證限度 확대) 財務部長官은 中小企業 등 擔保能力이 미약한 기업의 債務保證을 확대하여 企業의 資金流通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命令施行 후 6月의 범위안에서 信用保證基金法 第25條 第1項 및 新技術事業支援에 관한 法律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限度를 2배까지 확대하게 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時) 이 命令은 1993年 8月 12日 20時 부터 施行한다.

第2條(公布節次) 이 命令과 이 命令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은 放送 또는 日刊新聞에의 揭載에 의하여 公布할 수 있다.

第3條(金融機關의 營業時間 變更등) 財務部長官은 이 命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金融機關에 대하여 金融去來의 정지 또는 營業時間 變更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제13,957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

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명령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중소기업은행
6. 한국주택은행
7. 국민은행

③ 명령 제2조 제1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3.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
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기술사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3조 (실지명의) 명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명칭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4조(고액실명전환자산의 통보) 금융기관은 기존비실명자산의 명의가 실명으로 전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전환내용을 구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된 금융자산중 명령 제6조의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이내
2.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후에 실명으로 전환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그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5조(금융자산가액) 명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예금·예탁금·신탁재산등은 명령시행일 현재의 인출가능액
2. 적금·부금·계금등 적립방식의 금융자산은 명령시행일까지 납입한 금

액의 합계액

3. 보험료·공제료는 명령 시행일 현재의 환급가능액
4. 주식·출자지분·수익증권은 명령 시행일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5. 채권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6. 어음은 매입금액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6조(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기구) ① 재무부장관은 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의 실시 및 종합과세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이하 "실시단"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시단은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금융기관 기타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실시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 재무부령 제1,945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3년 8월 13일

재 무 부 장 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
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 및 동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명령 제2조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실지명의 확인방법)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의 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나) 주민등록증의 발급대상이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의 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족의 증표에 의하거나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영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권 또는 재외 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영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영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영 제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4. 외국인·외국단체의 경우

영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여권·신분증

제4조(고액실명전환자산의 통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액실명전환자산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금융자산가액) ① 영 제5조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동일채권을 수회에 걸쳐 매매한 경우에는 명령 시행일까지 이동평균법(당해 금융기관이 총평균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

2. 현물로 예탁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유사한 채권의 예탁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3.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② 영 제5조 제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금융자산과 유사한 금융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고액현금인출 및 채권등의 거래내용의 통보) ① 명령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3월로 한다.

② 명령 제10조 제2항에서 “채권등의 거래가액(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에 는 액면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금융기관 점포별로 매월 그 거래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명령 제1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명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의 국회승인에 관한 공포

헌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8월 12일에 발령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하여 1993년 8월 19일 헌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헌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영 삼

1993년 8월 21일

국 무 총 리 황 인 성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이 경 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홍 재 형

懸案分析 93-6 大統領 緊急命令制度의 檢討

1993年 9月 3日 印刷

1993年 9月 8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韓 國 法 制 研 究 院
印刷處 (株) 韓 國 互 聲 产 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원가 1,500원

